

**NHN**

# **ESG위원회 규정**

# 목차

1. 총칙
2. 구성
3. 회의
4. 부의사항
5. 부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권한)

1.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을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2장. 구성

### 제4조(위원)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4.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사무국)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내 조직을 위원회 사무국을 지정할 수 있다.
2. 사무국 내 지정된 담당자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할 직원 수명을 사무국에 둘 수 있다.

## 제3장. 회의

### 제7조(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하는 위원은 회의의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의 3영업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위원회 출석 인원 중 특정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안의 결의 시에는 해당 이해당사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3. 위원회는 물리적인 장소에 동시에 출석하여 위원회를 진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위원회를 진행할 경우의 결의사항을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인정한다.

### 제10조(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 위원회 의사록은 위원회에서 정한 안전한 장소에 원본과 부본을 3년간 보존한다.

### 제11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장.        부의사항

### 제12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ESG 주요 분야 추진 방향 및 성과
2. ESG 의무 공시 사항
3.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
4.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3조(결의사항의 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